

»» 치유농업사

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.



치유농업 프로그램의
개발 및 실행

1급 치유농업사 2급 치유농업사



치유농업서비스의
기획 및 경영

1급 치유농업사



치유농업서비스의
운영 및 관리

1급 치유농업사 2급 치유농업사



치유농업 분야 인력의
교육 및 관리

1급 치유농업사



치유농업자원 및 시설의
운영과 관리

1급 치유농업사 2급 치유농업사

»»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절차

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, 치유농업법 제11조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. 다만,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2급 치유농업사·국가기술자격·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 합니다

0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이수

- 1단계 양성기관 교육 신청
 - 시도별 양성기관 확인 후 양성기관 교육 신청
- 2단계 양성기관 교육생 선발 및 교육
 - 1급 치유농업사 : 142시간
 - 2급 치유농업사 : 142시간
- 3단계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발급

02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

-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
 -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(교육 이수증 등 요구서류 첨부)
- 제1차시험(선택형 시험)
- 제2차시험(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)
 -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
- 결격사유 조회
 - 치유농업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자

03 자격증 신청

-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접속
 - 합격자 확인·자격증 신청·신청서 작성



»» 부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

-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역할
 - 치유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「치유농업사 양성기관」을 지정하여 자격을 갖춘 치유농업사 배출과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
- 부산광역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

구분	기관명	주소	문의처	지정등급
1	부산 경상대학교	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	051-850-1188	2급
2	신라대학교	부산광역시 백양대로 700번길	051-999-5723	2급
3	부산과학기술대학교	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	051-330-7351	2급



»» 치유농업농업 관련사이트

- <https://www.nongsaro.go.kr/portal>
- <https://www.agrohealing.go.kr/>

시민농업팀 051)970-3741~8
(46702)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285



땅과 사람을 잇다

치유 농업



식물
곤충
동물
음식
농촌환경
문화



치유농업, 건강과 희망을 심다

고령화, 정신건강 중요성 증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치유농업은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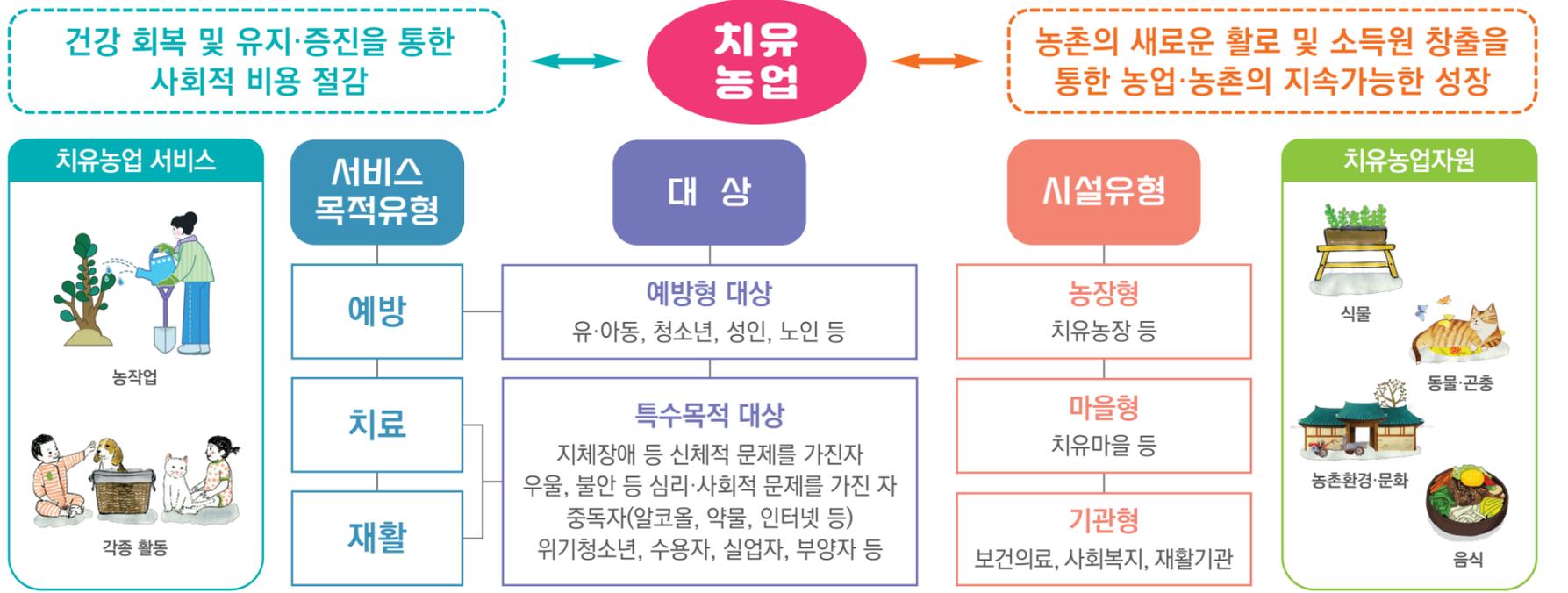


스트레스·우울감·생활습관성 질환에 대한 관심사가 농업·농촌의 영역으로 확대

농업·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 위험 현실화

- 자연 친화적 삶, 건강·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농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상승
- 만성[고혈압 등], 노인성[치매 등], 정신질환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협업 필요
- 초저출산율, 초고령 사회로의 빠른 변화로 농촌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험 현실화
-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로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

부산 치유농업의 방향



치유농업 육성



치유농업의 효과

